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2
----------	-----

2017. 7. 14.(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6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6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7월 12일

-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존 위임 사무를 근거 법령 및 법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 설 : 7건(별표1)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장·군수 위임사무 신설 >

- (환경정책과)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건)

- (수질관리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등 (2건)

○ 삭 제 : 5건

< 법령에 따른 권한이양 : 도지사 → 시장·군수 >

- (세정과) 도세 징수유예 등(3건) ※ 충북 도세기본조례 제3조
-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 명령 (1건)
※ 산림보호법 제24조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법 조항 폐지 >

- (치수방재과)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1건)

○ 그 밖의 개정사항 : 96건(별표1)

< 법령개정 사항 반영 >

- (경제정책과) 어린이 제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무 등 (5건)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 근거 법 조항 및 순서 등 위임사무 일제 정비 등 >

- 식의약안전과(10건), 유기농산과(8건), 경제정책과(11건), 산림녹지과(8건), 건축문화과(2건), 도로과(6건), 교통물류과(16건), 치수방재과(27), 환경정책과(3건)

3. 검토보고 요지

- 위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존 위임 사무를 근거 법령 및 법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사무는 현장지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법집행,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 앞으로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도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없는지와 시·군에 재정이나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위임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2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6월 2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2

제출연월일 : 2017년 6월 26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존 위임 사무를 근거 법령 및 법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 설 : 7건 (별표1)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장·군수 위임사무 신설 >

- (환경정책과)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건)
- (수질관리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등 (2건)

- 삭 제 : 5건

< 법령에 따른 권한이양 : 도지사 → 시장·군수 >

- (세정과) 도세 징수유예 등(3건) ※ 충북 도세기본조례 제3조
-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 명령 (1건)
※ 산림보호법 제24조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법 조항 폐지 >

- (치수방재과)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1건)

- 그 밖의 개정사항 : 96건 (별표1)

< 법령개정 사항 반영 >

- (경제정책과) 어린이 제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무 등 (5건)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 근거 법 조항 및 순서 등 위임사무 일제 정비 등 >

- 식의약안전과(10건), 유기농산과(8건), 경제정책과(11건), 산림녹지과(8건), 건축문화과(2건), 도로과(6건), 교통물류과(16건), 치수방재과(27), 환경정책과(3건)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 정 과	1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회 계 과	1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복 지 정 책 과	1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2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4	·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5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같은 법 제51조
	6	·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 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7	·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
보 건 정 책 과	1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식 의 약 안 전 과	1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다.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마.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교부 바.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 자. 마약의 소매 보고 차. 행정처분 카. 청문 타.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파.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하. 몰수마약류의 폐기·처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53조
경 제 정 책 과	1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 제 정 책 과	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3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같은 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4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31조제1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5	·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6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7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나.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다.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라.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마.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정정요구 사. 보고 및 조사 등 아. 개선명령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차.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2조, 제 55조, 제56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7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 정 책 과	8	·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9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2조
	10	·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2008.1.17> 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같은 법 제28조
투 유 차 과	1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며, 그 밖에 KGB복합, 옥산, 오창제2, 오창제3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청주시에 위임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3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농 정 책 과	1	·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녹 지 과	1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
	2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같은 법 제13조
	3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4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	•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예술 산업과	1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2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4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문화과	1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2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군발 전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
	2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3	-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사.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아. 공동구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설비 카. 전기공급설비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타. 가스공급설비 파. 방송·통신시설 하. 시장 거. 열공급설비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더. 운동장 러.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머. 도서관 버. 문화시설 서. 연구시설 어. 사회복지시설 저. 공공직업훈련시설 처. 청소년 수련시설 커. 유수지 터. 방화설비 퍼. 저수지(댐 제외) 허. 방풍설비 고. 방수설비 노. 사방설비 도. 방조설비 로. 하수도 모. 도축장 보. 장례식장 소. 종합의료시설 오. 폐차장 조.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하천(소하천에 한함) 포.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 화장시설 누. 봉안시설 두. 자연장지 루. 공동묘지	
	4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같은 법 제32조
	6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7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8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같은 법 제9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9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부터 제91조
	10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1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개발법 제4조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6조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제58조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12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13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6조의2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과	1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원상회복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91조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40조제4항
	3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점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69조, 9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10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5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6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 물류 과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바. 등록번호표의 반납 사.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등 아.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패조사 차.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2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4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같은 법 제8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5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6	자동차의 사용정지	같은 법 제89조
	7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제4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 물류 과	8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파.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하. 재정지원, 조합감독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너.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더. 정관변경 등의 명령 러. 면허의 취소 머. 청문 버.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라.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9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10	·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방 재 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마. 인가내용 고시 바.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방 재 과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제6항
	11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및 검사의뢰·준공검사·공사비예치	같은 법 제33조제8항
	12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3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4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같은 법 제38조제1항
	15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38조제4항
	16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7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18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방 재 과	19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 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20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21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3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조사·통지	같은 법 제76조
	2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같은 법 제78조
	2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26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7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8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29	·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8조
	30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1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2	·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3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5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20조
	34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 과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 법 제17조
	3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4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6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7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8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9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3
	10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의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같은 법 제6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 과	11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2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하. 허가중의 재교부 거.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1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 과	15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결과, 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의10 별표 10
	16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 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17	-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나.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라.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마.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질 관 리 과	1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항
	2	·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3항
	3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42조
	4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2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관계법령발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세정과

□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 제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도세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환경정책과

□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수질관리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산림복지과

□ 산림보호법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경제정책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② ~ ⑦ 생략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검사설

비, 제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제4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